Ⅲ - 1 - 3

제 목	국 문	의료보험에서의 권리분쟁에 관한 고찰
	영 문	A Study on Disputes of the Right under the Health Insurance System in Korea
저 자 및 소 속	국 문	김운묵, 문옥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학 교실
	영 문	Un Mook Kim, Ok Ryun Moon *Dept. of Health Policy & Administration, School of Public Health, Seoul National University*

분 야	보건관리	발 표 자	김 운 묵
발표 형식	구연	발표 시간	15분
진행 상황	연구완료 (o), 연구중 ( ) → 완료 예정 시기 : 년 월		

1. 연구 목적

o 전국민의료보장 이후에 적법절차에 따라 발생되고 처리된 의료보험권리분쟁의 현황을 파악, 정리하여 향후 이에 관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

o 행정심판제도로서의 의료보험심사청구제도를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권리구제제도로서의 내실화를 모색한다.

o 의료보험에서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제도를 이론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비롯되는 이해 당사자간의 형평을 추가하고, 합법적으로 합목적적인 이해조절의 원리를 도출한다.

2. 연구 방법

o 의료보험 심사청구현황 자료는 의료보험연합회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이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각 연도별 자료를 수집하였다.

o 의료보험 소송현황은 의료보험연합회가 전국의 372개 조합을 통하여 전수조사한 현황자료를 중심으로 파악하였다.

o 의료보험 심사청구제도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일본과 독일의 관련제도를 비교법적 분석방법을 통하여 그 제도의 구성현황을 검토하였다.

o 제3자에 대한 구상권제도의 이론은 문헌분석적 방법을 이용하였는데, 특히 민간보험,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있어서의 제3자 구상권제도에 관한 학설과 판례를 분석한 국내의 문헌과 일본의 관련제도에 관한 문헌을 참조하였다.

3. 연구결과

o 현재의 의료보험심사청구제도는 ① 의료보험심사위원회의 구성방법에 있어서 권리구제기능의 결여, ② 제도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홍보 미흡, ③ 업무수행 인력의 부족과 독립성 결여, ④ 심사기간의 과다소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.

o 따라서, 의료보험심사청구제도의 권리구제기능과 그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의료보험 행정인력에 대한 재교육을 내실화하여 의료보험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.

o 제3자에 대한 구상권제도에 관한 법리를 검토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.

① 대위취득의 범위가 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수급권자의 재산상 손해 또는 정신상 손해는 포함되지 않는다.

② 업무상재해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구상권행사에 관하여 구상권행사설은 보험급여의 제공에 법률상 장애가 있으므로 급여제한설이 타당하다.

③ 수급권자의 과실상계는 산재보험법의 구상권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인 상계후 취득설이 의료보험에서의 제3자구상권에도 적용됨이 타당하다.

④ 구상권행사에 제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수급권자와의 특별관계는 입법적으로 해결되기 전까지 우리 의료보험법에는 인정되기 어렵다.

⑤ 보험자와 요양기관의 법률관계가 "지정제" 또는 "계약제"에 의하여 성립된 것과 관계없이 요양기관의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요양기관이 부담한다고 함이 타당하다.

4. 고찰

우리 나라 의료보험에서의 권리구제제도는 그 장치와 기능이 아직 미흡하였고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결정과 행사에 있어서 그 논리적인 기초가 부족한 것이 확인되었다. 즉, 국민의 의료보장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인식의 제고와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는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다.